

의안번호	2210080
의 퇴 인	황명선의원
회 답 일	2025. 5. 14.
추 계 번호	25D2520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장등이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59억 5,000만원(연평균 11억 9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3조의2 신설)	1,190	1,190	1,190	1,190	1,190	5,950	1,190

주: 1. 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3조의2 신설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2. 본 추계는 17개 광역시·도, 77개 시, 76개의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) 등 총 170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안에 따라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며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2(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) 신설	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·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의2(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) 신설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시장등이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
 - 이때, 시장등¹⁾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)를 말함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제3조(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유료도로법」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장등이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- 본 추계는 17개 광역시·도, 77개 시, 76개의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) 등 총 170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안에 따라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며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시장등이 되고 교통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50%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
 - 이에 14명의 위원 중 50%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참석수당(회당 25만원)을 지급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시장등이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1억 9,000만원씩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59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 - 연간 11억 9,000만원(=170개 지방자치단체×민간위원 7명×4회×25만원)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교통안전자문위원회	1,190	1,190	1,190	1,190	1,190	5,9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17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며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